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76 발의연월일: 2021. 1. 14.

발 의 자:김교흥・김승원・문진석

신동근 • 이성만 • 홍영표

윤관석 • 이학영 • 안호영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노선을 정해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승객이 없는 경우에도 운행해야 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갖고있어, 출퇴근 시간대 등 수요가 불균형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이곤란함.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 등을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다양한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하는 경우 또는 대중교통현황조사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함.

이에 농·어촌 및 대중교통부족지역 외에도 버스노선이 부족한 신도시 등 다양한 경우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 등).

주요내용

- 가. 신도시는 활성화되기 전까지 수요부족으로 적정 수준의 버스 공급이 어려우므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에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을 허용함(안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신설).
- 나. 노선버스는 교통 수요가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환승센터(여객자 동차터미널, 도시철도의 역사 등)에 즉시 증차가 곤란하므로,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허용하여 환승센터와의 원활한 연계를 도모함(안 제3조제1항제3호라목 신설).
- 다.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만 이동수요가 많은 경우 정기적으로 운행해야하는 노선버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을 허용함(안 제3조제1항제3호마목 신설).
- 라. 수익성 없는 노선은 유지하기에는 적자가 심하고 폐지하기에는 주 민불편이 우려되므로, 기존 노선을 폐지 또는 단축하여 대중교통체 계의 효율성을 기하는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허용함(안 제3조제1항제3호바목 신설)

마.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신도시 지역에 수요응답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중이나 특례기간 만료 후 사업지속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규제특례를 받아 실증과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연장 운행을 허용함(안 제3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에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 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의 역사, 철도의 역 시설 등 복수의 교통수단 간 연계를 위한 환승센터로 비정기 운행하는 경우다. 출퇴근 시간대 등 시간대별로 교통수요에 편차가 커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 바. 수익성이 없는 등을 이유로 기존 대중교통 노선을 폐지 또는 단축하여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경우
- 사.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안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 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 3.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 통 · 운행시간 · 운행횟수를 여 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 업 가. • 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신 설> 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의6에 따른 광역교통특별 대책지구에서 대중교통 불 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 으로 활용하는 경우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 <신 설> 철도의 역사, 철도의 역 시 설 등 복수의 교통수단 간 연계를 위한 환승센터로 비정기 운행하는 경우 <신 설> 마. 출퇴근 시간대 등 시간대

<신 설>

<신 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 제4조 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 ---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 ---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 --- 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

<u>별로 교통수요에 편차가</u> <u>커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u> <u>경우</u>

바. 수익성이 없는 등을 이유
로 기존 대중교통 노선을
폐지 또는 단축하여 대중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기하
고자 하는 경우

사.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 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소(면허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특별시장·광역시장·특</u> 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u>다)</u>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 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 <u>시 · 도지사</u> - |
|------------------|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